

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입증지 조례
시행규칙 폐지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신 연 희 인

2014년 12월 5일

서울특별시 강남구 규칙 제760호

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

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.

부칙

이 규칙은 2015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폐지이유 및 주요내용

1. 폐지이유

종이수입증지 사용이 수입증지 요금계기로 대체되면서 종이 수입증지 발행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이 조례 등에서 삭제됨에 따라 규칙은 폐지하고 필요한 사항은 현재 개정 중인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입증지 조례」에 통합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수입증지 판매인에 관한 규정 폐지
- 나. 종이수입증지의 사용중단으로 판매인 지정의 필요성이 없어짐
- 다.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, 판매수수료, 감독, 교환 등 관련 규정 폐지